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한신 의원

나. 의안번호 : 제2179호

다. 발의일자 : 2024.10.15.

라. 회부일자 : 2024.10.18.

### 2. 제 안 사 유

-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대규모 개발지구 사업시행자 및 대규모 개발지구 이외 시설 등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 급수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3조제1항).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수도시설 자산 등을 반영함(안 제4조제1항).

###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가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원인가부담금 소송 현황

-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원인가부담금 납부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사업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가 원인가부담금 반환 지급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 개정<sup>1)</sup>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와 동시에 서울아리수본부는 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게 정정 부과하여 건축행위자에게 환불 알림(공고) 등을 통해 418억원을 반환하였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전협의 부재, 이중부과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제기(78건)한 원인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23년 4월 서울시가 ‘이중 부과’를 이유로 패소함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4건<sup>2)</sup>)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SH공사와는 협약('23.2월)을 통해 원인가부담금 부과 및 납부를 유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원인가부담금 납부액 479억원<sup>3)</sup>과 발생이자 등<sup>4)</sup>을 합한 541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현재 115억원을 환불하였고 2025년 예산안에 반환금 303억원을 편성하였음.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원인가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1심 패소 후 2심 진행 중

3) 건축행위자 반환을 위한 정정부과액 420억원 + 추가 납부액 59억원

4) 93억원(추정액)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현황>

구 분	당초 현황	소취하	소계	소송 진행		소송종결 (패소)건수	금 액 (소취하 55건 포함)
				건수	진행단계		
계	78	55	23	4	2심	19건	47,320백만원
LH공사	13	-	13	1	2심	12건	4,586백만원
SH공사	65	55	10	3	2심	7건	42,734백만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환불 금액>

사업지구	블록수	환불금액(백만원)			비고
		소계	원인자부담금	이자	
양원 외 22	923 <sup>5)</sup>	54,137	47,877	6,260	이자 추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조정 관련(안 제3조제1항)

-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규모 택지지구 내 부과 대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이중 부과)이 되고 있음.

따라서 안 제3조제1항과 같이 ‘지구 내 시설 건설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중부과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 안 제4조제1항 및 별표는 매년<sup>6)</sup> 자산 평가를 통해 단위사업비를 산정하고 개발지구 수도공급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위사업비를 현행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할

5) 환불 총 923블록: 소송(87건) 949블록[47,320백만원(원인자부담금 납부 904블록(46,247백만원), 원인자부담금 미납 45블록(1,073백만원)],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소송 미제기 19블록(1,630백만원)

6) 현행 조례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 자산을 기준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외’에 대해서는 2003년 자산을 기준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음.

수 있고 개발지구 내 배수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중부과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개정안 요지]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기타 추가비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총사업비는 추가동설비자산 중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포함)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총사업비는 추가동설비자산 중 취수, 도수, 정수, 송수, 지역배수지를 포함)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외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다만,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적용 급수관 구경을 15mm로 한정하지 않고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구경의 급수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현행 「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및 제71조(원인자부담금)는 수도사업자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법 개정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소송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의 부족도 지적된 만큼 부담금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임.